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4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의자:이수진(비) · 윤재갑 · 우원식

어기구・김승원・허 영

배진교 · 김경협 · 심상정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음.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안 제77조의6 신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고용 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등(안 제77조의7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안 제77조의8 신설)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합계가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안 제77조의9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 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6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중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를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에도 불구하고예술인"을 "예술인"으로,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제2항 중 "근로자·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의3(제77조의6부터 제7 7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이하 "노무제공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1. 이직일 이전 21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 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④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⑧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 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 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제110조제1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 및 제69조의3"을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및 제69조의9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제63조제5항 및 제69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제2항,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제2항, 제74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제1항제4호 중 "제5장의2"를 "제5장의2 및 제5장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 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09조제1항(제77조 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9조제1항(제77조의5 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 항제1호 중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9조제1항(제 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9조제1항(제77 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7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7 및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1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률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 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 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는 제외한다) 체결하거나 자영 업을 개시하는 경우
- 2.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 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정 안 개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헊법 일부개정법률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2)	_
	_
	_

- 1. ------근로계약,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 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 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한다)을 체결하거나-----
 - 2.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 ⑤ 예술인----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다.

⑥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 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 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 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
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
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보
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
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
<u>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u>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u> 따른다.</u>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현행과 같
<u>수</u>
②
<u></u> 근로자, 예

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 ~ ⑧ (생 략) <u><신 설></u>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술인,	제77조의	6제1항에	따른
노무제	공자		
	<u> </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이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이하 "노무제공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 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 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 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 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 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 공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 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 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 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u> 험자격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가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이용및보험관계의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 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플랫폼의 이 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 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보
-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 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 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 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 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u>신</u> 설>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 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 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7 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 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 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 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 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 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 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 만 해당한다.
- 1. 이직일 이전 21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 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 을 것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출 것
 -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 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을 것
 -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
 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 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 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 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 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 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징수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는 금 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 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 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 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 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 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 로 정한다.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기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출 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 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 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 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 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 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히
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
•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2. (생략)
- 3. <u>제18조</u>에 따른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확인
- 4. (생 략)
- 5. <u>제40조 및 제69조의3</u>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의 사무소"로 본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u>
<u>제77조의6제3항</u>
4. (현행과 같음)
5. <u>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u>
<u>3 및 제77조의8</u>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및 제69조의9제1항·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 7. 제61조(제63조제5항 및 제69 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 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 급 제한
-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제2항, 제74 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 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정수
- 9. ~ 11. (생 략)
 ②·③ (생 략)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 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

제69조의	의9제]	1항・	제2	항,	제77
<u> 조의5제</u>	2항	및	제77:	조의]	10제2
항에서	준용	하는	· 경-	우를	포함
한다)					

-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 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제2항, 제74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9. ~ 11.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벌칙)	1	 	 _
		 	 _
		 	 _

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u>제5장의2</u>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 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생략)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 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5장의2 및 제5장의3</u>
②
.
1. <u>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u>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2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과태료) ①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징수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
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
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제1호
<u>의 경우로 한정한다)</u>

-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 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 하여 준 자
-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 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 제3항 및 제77조의6제3항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전 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이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u>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u> <u>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이</u> <u>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 니한 자
-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 거나 기피한 자

<신 설>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
 지 아니한 자
- 8. 제7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 -----

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 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 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 거나 기피한 자
- ③ 제87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 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 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
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87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
3 <u>제87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u> 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